

학 칙

(문의:기획관리부, 2025.8.1시행)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주한 외국인, 해외교포 및 입학자격을 갖춘 내국인의 자녀들에게 미국형 교육제도에 준한 제반 교육을 목적으로 함

제2조 (명칭)

본교는 한국켄트외국인학교 (KOREA KENT FOREIGN SCHOOL)라 한다.

제3조 (위치)

본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5길 13 내에 둔다.

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

제4조 (수업연한)

- 유치원 1년
- 초등학교 5년
- 중학교 3년
- 고등학교 4년

제5조 (입학자격)

본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외국인의 자녀
- 해외 3년 이상 장기거주 또는 6학기 이상 외국소재의 학교를 재학하고 귀국한 내국인<개정 2025.8.1>
-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취득한 내국인의 자녀중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2제1항의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중 학교운영위의 승인을 받은 자 <신설2022.11.1, 개정2025.8.1>

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

제6조 (학급 수)

총 학급수는 별표1과 같다. <개정 2025.8.1>

제7조 (학생 정원)

- 본교의 학생정원은 300명으로 한다. <개정 2025.8.1>
- 각 과정별 학급수 및 학년별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. <개정 2025.1.1>

제4장 교육과정, 수업일수 및 고사

제8조 (교육과정)

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미국학교의 교과과정에 준한다.

제9조 (수업일수)

수업일수는 매 학년 177일 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 (고사)

-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는 담임 및 해당과목 교사의 책임하에 필요시마다 실시한다
- 중, 고등학교는 해당 담당 과목 교사의 책임하에 정기 중간 및 기말고사 이외의 필요시마다 실시한다.
- 초등학교부터 전 학년은 매년 최소2회 MAP(미국NWEA시행) 시험을 치른다.

<개정2022.11.1>

제5장 학년, 학기 및 휴업일

제11조 (학년 및 학기)

-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유치원 K5
 - 초등학교 1학년 ~ 5학년

- ③ 중학교 6학년 ~ 8학년
- ④ 고등학교 9학년 ~ 12학년
- 2. 학년은 2학기로 나누며 1학기는 8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이며,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6월초까지로 한다. (해당 학사 일정에 준함) <개정 2022.11.1>

제12조 (휴업일)

- 1.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겨울방학

봄방학

여름방학 (해당 년도 학사일정에 준함)

근로자의 날

『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』 1,2,3조 준용 <개정2022.11.1>

- 2. 학교장은 제9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휴업일을 가감할 수 있다.
- 3. 제1항 외에 비상 재해, 기타 급박한 사항 발생 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. <신설2009.7.14>

제6장 졸업 및 수료

제13조 (수료) 본교의 수료, 졸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.

- 1. 각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일정할 때에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사정하여 정한다.
- 2.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결석일수가 1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- 3. 소정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. <개정2009.7.14>

제14조 (학위증) 삭제<삭제2009.7.14>

제7장 입학

제15조 (입학 시기)

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인 8월 중순 경으로 한다.

제16조 (입학)

본 학칙 2장 5조에 해당되는 모든 신입생은 학부형과의 상담과 평가시험을 치른 후 입학여부 및 학급배정 등을 학교장이 결정한다. <개정2022.11.1>

제17조 (전,편입학)

본교에 전, 편입학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입생 선발과 같은 모든 입학절차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,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18조 (입학 서류)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
2. 성적표 (3년 이상)
3. 학생 및 학부모 여권 사본
4. 예방접종카드 사본
5. 추천서
6. 영문자기소개서
7. 출입국사실증명서
8. 외국 시민권 증명 제출서류 (외국인등록증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9.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<개정2022.11.1>

제19조 (전, 편입학 서류)

본교에 전, 편입학을 위해서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장 휴학, 퇴학 및 상벌

제20조 (휴학)

1.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휴학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고 학교장에게 제출한다.
2.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, 기타 사유의 경우는 최대 1년이하로 한다. <개정2022.11.1>

제21조 (자퇴)

스스로 퇴학(타교 전학을 포함)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

한다.

제22조 (표창)

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, 근면한 자, 선행에 있는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23조 (징계)

1.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.
2.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, 정학 및 퇴학으로 하며, 학교 교육위에서 결정한다.
3.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, 학교교육위원회로 7일이내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2022.11.1>

제24조 (퇴학 처분)

학생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2.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3.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
4.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
5.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<신설2022.11.1>

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

제25조 (수업료, 입학금, 기타비용 징수)

1. 수업료 및 입학금, 기타 비용 징수는 매년 해당 연도 학교 예산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 결정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.
2. 수업료 및 입학금, 기타 비용 징수의 환불에 관한 사항은 수업료 안내문 및 전학신청서를 준용한다. <신설 2025.8.1 >

제26조 (체납자 조치)

1학기 이상 학비를 체납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 후 학생의 출석 정지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

제27조 (장학금)

학생의 재정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적과 서류 심사를 거쳐 학비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대체한다.

제10장 기타

제28조 (교장의 자격과 임무) 교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 <신설 2009.7.14>

1. 학사이상으로서 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.
2. 해당국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
3. 박사학위 소지자<신설2022.11.1>
4. 교장은 학사를 총괄하고, 민원처리를 책임지며, 소속 교직원을 지도·감독하고, 학생을 교육 한다. <신설2025.8.1>

제28조의2 (교감의 임무)

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학사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,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2025.8.1>

제29조 (교원의 임용기준 및 면직) <신설2009.7.14>

1. (교원의 임용기준) 해당국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한민국 외국인학교 교원 사증취득에 학 자가 없는 자격 소지자
2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면직할 수 있다.
 - 1)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 - 2) 본교 교사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

제30조 (학칙개정)

본교의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교육위의 심의 및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한다. 단, 증원 등 주요한 인가사항의 변경은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1>

부칙 (1999.8.31)

1.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과 이사회에서 정한다.
2. 이 학칙은 199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09.8.17)

제1조 (시행일)

이 학칙은 2009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전학에 대한 경과조치)

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전학에 대한 기준은 『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·운용에 관한 규정』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3조 (기준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

『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·운용에 관한 규정』 시행 당시 재학중인 학생은 제5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한다.

부칙 (2022.11.1)

제1조 (시행일)

이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학년별 정원규정)

『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·운용에 관한 규정(2009.2.6 시행)』의 경과조치로 인한 내국인 학생 학년별 정원 30% 규정은 2010.3.1일 이전 입학생이 재학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.

부칙 (2025.1.1)

(학년별/학급별/과정별 정원) 이 학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{별표 1}

부칙 (2025.8.1)

(학년별/학급별/과정별 정원) 이 학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{별표 1}

[별표 1]

과정 및 학년		학급수	학생정원
유치원	K	1	10
소계		1	10
초등학교	G1	5	14
	G2		20
	G3		20
	G4		22
	G5		22
소계		5	98
중학교	G6	3	21
	G7		25
	G8		24
소계		3	70
고등학교	G9	6	33
	G10		32
	G11		26
	G12		31
소계		6	122
총계		15	300

학
칙

2025.08.01

한국켄트외국인학교

KOREA KENT FOREIGN SCHOOL

SINCE 1993